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59
----------	-------

발의연월일 : 2025. 8. 25.

발 의 자 : 한정애 · 이병진 · 박희승
조인철 · 유동수 · 이학영
허영 · 임오경 · 장철민
안호영 · 김기표 · 최기상
부승찬 · 강준현 · 김동아
조정식 · 송옥주 의원
(17인)

제안이유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그동안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남북의 대치로 인해 오히려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하였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합계획의 경우 5년마다,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라.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조성과 개발·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거나 물품·장비의 반입·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반입 등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적이용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평화적이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무장지대”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2.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평화적이용사업”이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단독, 남북 공동 또는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에서 추진하는 평화 증진, 남북협력 증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비무장지대 내 평화와 남북공동번영의 추구

2. 접경지역의 발전과 남북 접경지역 간 협력 도모
3. 비무장지대 내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 및 편의 제공
4. 비무장지대 내 자연환경 보전
5. 비무장지대의 가치 및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참여 증진

제4조(국가의 책무) 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간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가치 및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비무장지대(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연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제2장 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추진전략 및 주요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3.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필요한 조직과 재원에 관한 사항
4.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남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국제적 협력에 관한 사항
6.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7.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국민들의 이해 및 참여 증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한 후 제9조에 따른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

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4.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관 및 단체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시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검토·조정하여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안을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안이 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안을 제출한 기관과 협의

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안을 제9조에 따른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및 확정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의 환경적 고려)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 ①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중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남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국제적 협력에 관한 사항
6.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관련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2. 위촉위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

제10조(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 그 조성·개발·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지구를 지정·조성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무장

지대의 환경 보전, 남북협력 증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지구 지정·조성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지구의 지정·조성·개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역사, 환경, 생태, 산림, 토지 이용 등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 전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특례 등) 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

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거나 물품·장비의 반입·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입 및 반입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통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 통신 등의 기반 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적이용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평화적이용사업

제15조(사업시행자) 평화적이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6.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제16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평화적이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 및 남북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평화적이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사업의 시행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보고와 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 및 업무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조사·검사를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0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군사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